

제238회 시의회(정례회)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2. 6. .

서울특별시의회
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10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2년 6월 8일
- 라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개정(2012.3.16시행)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고, 운영실적이 저조한 “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

나. 주요내용

- “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

3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2. 5. 3~ 2012. 5.23)결과 :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1)개정(2012.3.16시행)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됨에 따라, 운영실적이 저조한 “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”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)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 및 시·도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
 - 서울시 건강가정위원회는 단 1회(2007년 11월)만이 개최되었고, 이후 행정안전부의 폐지 확정(2008년 5월 27일, 국무회의)에 따라 개최되지 않아,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.

1) 건강가정기본법 [시행 2012.3.16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